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9. 24.(목) 09:0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05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 5.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9월 22일 있었던 제5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5-51-22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2월 6일 증자와 관련하여 부과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에게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인명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과징금 부과(안)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6일 증자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년 4월 6일 OBS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OBS 인원감축은 추가 자금 확보와는 무관하고 증자 및 대여의향서도 구체성이 부족하여 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 6월 12일 방통위와 OBS 대표자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최대주주는 2015년 7월 중으로 구체적인 증자계획을 제출할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31일 OBS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을 추가 제출하였는데 이때 최대주주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표기하지 않았고 기타 주요주주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정명령 및 위반사항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방통위는 금년 2월 6일 OBS에 대하여 증자 미이행금액은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증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증자에 상응한 금액만큼의 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OBS는 증자 미이행금액 39.5억원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못했으며, OBS가 제출한 증자에 상응한 조치방안도 구체성과 이행가능성이 미흡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정명령 위반 건과 관련하여 OBS 최대주주·경영진은 증자계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방송환경에서는 주주 및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어

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대주주 지원, 경영실적 개선 등으로 현재 OBS 운영 및 현금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고, 최대주주 단독으로 주식을 인수할 경우 방송법상 소유제한 초과 취득에 해당되어 증자 실현이 불가능함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주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증자로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OBS 의견에 대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BS 기간 내 증자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출한 계획도 구체성이 미흡하므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업무정지는 시청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재 수준은 OBS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 없이 기준금액인 5,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9월 중 OBS의 행정처분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OBS의 어려운 경영 상황이나 재정 형편을 고려한다면 오늘 이 안건을 심결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OBS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OBS 노사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허가 시에 OBS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미이행 하고, 그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오늘 심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도 이행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불이행하는데 이를 묵인한다면 사실상 저희의 직무유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4페이지에 보시면 OBS 운영 및 현금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데 꼭 증자만 요구하느냐?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증자 약속을 불이행해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대주주가 자본을 대여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 지표로 보면 약 98%의 자본잠식이 일어났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약 19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서 지금 OBS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2페이지 경과사항에서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면 지난 6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OBS 대표자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재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OBS의 입

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대주주와 대표자를 부른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백성학 영안모자 1대 주주께서 오셔서 저희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님께서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기관과 이렇게 간담회를 해 보는 것은 사업권 받고 처음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준 것만으로도 본인은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입장도 설명하고 OBS의 입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주주들을 설득해서 7월 말까지는 증자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간담회 때 요지였습니다. 맞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결과적으로 그 당시 간담회에서 했던 약속을 미이행한 상태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약속서를 제출했다는데 그 약속서가 이행가능성이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사실은 이행가능성이 없습니다. 투자약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2015년 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맞습니다. OBS에 대한 재허가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내년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내년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실제로 올 말까지 재허가 당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증자 등을 비롯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약속이 불이행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바로 내년에 재허가를 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저희의 입장을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안건을 심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고삼석 위원께서 지금 이 문제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보기도 했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말이 재허가 심사라고 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우리 정책당국뿐만 아니고 OBS의 주주, 경영진도 함께 1년 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심결 안건에 보면 '과징금 부과 5,000만원' 이것이 재정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체제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나, 적절하나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OBS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요구해 온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다른 방송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함수관계라고 할까..., 관련 사항이어서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만 특별한 정책 지원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전과 배분료, 결합판매율 등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주, 대주주, 경영진과 OBS의 기자, PD, 사원 또는 시청자들 그 양자를 구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BS의 대주주, 경영진이 우리의 시정명령, 우리의 요구 또는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정책 주 대상은 사원, 시

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당국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겠지만, OBS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구분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1년 뒤에 재허가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사업자와 심각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사업자는 사유재산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은 다른 것이고, 전파를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나 사원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대처하되 1년 뒤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도 준비해야 하고, 사업자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나가고, 오늘 이 심결사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피심인의 의견을 보니까 그동안 방통위의 지적사항이나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 상황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전환사채로 하는 방안도 논의가 한 번 있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주주쪽에서 사채식으로 빌려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이자율이 꽤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시장 이자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정부 정책당국으로서는 방송사에게 사채를 빌려서 경영을 정상화하라, 이끌어 가라고 하기도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말하자면 그것도 궁극적인 대책이 못 된다는 이야기인데, 중장기적으로 해결할만한 기반이 있다면 상의해서 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중장기적인 좋은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1년 뒤에 갑자기 충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상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문제는 1년 반 이상 진행이 되어 온 사안이고, 사무처에서 경과사항에 자세히 보고한 것

처럼 방통위와 OBS 간의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저희가 OBS 측에 시간도 많이 줬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의 경영상황, 그리고 증자를 하는 여러 가지 대안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재방법 중에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안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제재수단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방통위가 관장하는 다른 법에서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뿐만이 아니고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이 별도로 있는데, 방송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제재조치로서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법에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방송법상에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뿐만이 아니고 정액 또는 매출액 대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다양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래 2013년 12월 27일 OBS에 대해서 조건부 재허가 의결을 할 때 증자 관련된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증자 관련 조건은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겠다는 것을 의견진술 과정에서 채무 상황이 부족함을 지적 받아 제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허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2014년 상반기 중에 50억원을 증자하겠다는 내용은 OBS 측에서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제안을 했던 것이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OBS가 스스로 5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통상적이라면 OBS가 대주주와 증자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대주주가 아닌 다른 증자방법을 준비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의견진술 과정에 대주주께서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의견진술 과정에서 대주주가 참석해서 증자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자는 10.5억원만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피심인 의견에 보면 '최대주주 단독으로 주식을 인수할 경우 방송법상 소유제한 초과 취득에 해당되어 증자 실현이 불가능함에도...'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주주가 몇 퍼센트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까지 합쳐서 정확하게 39.1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0.8% 정도는 추가적으로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0.8%는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어느 정도 추가로 증자를 할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액면가로 보면 약 19억원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는 전혀 의사가 없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저희에게 제출한 확약서에 보면 최대주주가 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서는 나와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미루어 보면 여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증자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실 2015년 2월 6일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증자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계속 해 왔던 것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고, 또 이번에는 금액과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협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신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OBS가 2015년도 상반기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발생하였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2015년 6월까지의 약 19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피심인 의견 밑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2015년 2/4분기 3.3억원 흑자전환은 어떤 뜻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것은 원래 당초 제출했던 목표치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 2/4분기에 3.3억원을 흑자전환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달성이 안 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한테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르면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뒤에 시정명령도 나오지만 이 부분의 재허가 조건도 이행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올해 6월 12일 방통위와 OBS의 대표자간 간담회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제 기억에는 그때 최대주주께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나 하면 '단독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주주와 같이 증자를 하겠다. 그런데 다른 주주들은 증자에 응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을 설득 하고, 다른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주주가 보증을 선다든지 해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해서 반드시 7월 말까지 증자에 관한 내용을 실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런 취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OBS가 스스로 '50억원을 증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당연히 최대주주와 주주들이 어떤 논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제가 쪽 확인한 것처럼 약속이행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주주가 증자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BS와 OBS의 최대주주는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OBS의 대표이사과 직원들이 OBS의 최대주주에 대해서 이런 시정명령이 와 있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는 OBS에 제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OBS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OBS의 최대주주, 또는 주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경영진에서는 최대주주와 만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사실 강력하게 촉구하고 OBS의 경영진과 직원들, 최대주주가 힘을 합쳐서 OBS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회사 내부 일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합판매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는 등 OBS가 계속 적자인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미디어크리에이트 재허가를 함에 있어서 일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OBS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자율적인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늦게 시정명령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5월 6일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거의 5개월 가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시정명령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상응한 조치방안이라도 이끌어 내고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것에 대해 부합하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는 도리가 없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단순히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표면적, 형식적, 절차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재를 받는 OBS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영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단기 손실을 흑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작년, 금년, 내년을 위한 증자가 아닌, 장기적인 증자를 통한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OBS가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끌고 가려면 장기적으로 증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혁신적인 경영개선과 증자는 불가피한데, 저희가 이번에 제재를 하기에 앞서 계속 그것을 유예하고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OBS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제재는 더 큰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취

해야 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내년 재허가를 말씀하셨지만, 재허가도 재허가지만 경영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오늘 이런 조치는 아주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적으로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더 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가적으로 OBS 측도 그동안 주장해 왔고, 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도 일부 이야기했는데, 어떤 교수가 진행한 광고료 배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재정을 받을 수 있는데 방통위가 그것을 부정한다, 용역을 맡겨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채택을 안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용역을 진행한 교수의 가정적인 사건인지, 왜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 배분료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방송기반국의 방송광고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는 근거 있게 공정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든가, 그 연구 교수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러이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인지... OBS 측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정부가 안 해 주느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렇게 해주려면 결합판매비율을 OBS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해 주고 전반적으로 조정하려면 우리나라 방송계의 다른 방송사들이 다 동의해 주고 '우리 것을 조금씩 할애해서 OBS 하나를 살리자' 이렇게 합의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가 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인방송인데 경인지역의 방송으로서 그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미디어크리에이트에 10개 방송사가 다 광고배분을 받고 있고, 결합판매비율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의 한 사인 OBS에 대해서만 상향 조정해 주면 다른 방송사들이 다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한국의 방송계가 다 같이 OBS 하나 살려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애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서 정책당국으로서 정책지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OBS 자체가 경영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든 것이 주이다, 정부는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저희가 입장이 없는 것처럼 비쳐질 것 같아서 기록을 위해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타 광고를 담당하는 과의 의견까지 다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OBS 쪽에서,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OBS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주장에는 그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제들, 그리고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방송 시장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광고상황은 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 과거 iTV에 비해서 지금 OBS의 광고매체로서의 경쟁력 또한 현저히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OBS 내·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OBS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OBS가 경영이 어렵고, 그래서 OBS 경영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첫째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그다음에 현재 지상파 광고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성장 및 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OBS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일단 인식을 해야 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정부의 정책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OBS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그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잘못된 판단들, 경영에 있어서 실기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OBS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대주주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OBS 인사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해법이 안 나옵니다.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OBS의 문제는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고 보는데, 자꾸 OBS 대주주 쪽이나 경영진들 쪽에서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해법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의존해서는 앞으로의 희생방안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특히 결합판매비율이나 광고판매 절대규모를 올려줄 때 여타의 지역 민방들에 대한 엄청난 희생을 강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역 민방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전부 공유가 되고,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OBS에 대한 방통위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OBS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 이런 이야기까지 일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 금융권에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어느 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조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 방통위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개별 제도, 정책별로 생각해야지, 어느 특정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들을 생각해서 그 사업자가 경영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나 방통위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OBS가 됐든 국회에서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개별 케이스,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보고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OBS의 경우에는 신생방송사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광고결합판매비율을 17.3% 가중해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 맞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7.3%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17.3%가 적정하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연구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TV와 라디오를 분리해서 결합판매 증분비율을 산정해 보면 OBS가 20%가 넘는 증분비율이 나오기는 하나,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에는 라디오들은 전부 마이너스 비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에 대해서는 거의 결합판매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방법이다, 즉 TV와 라디오를 분리해서 계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20%가 넘는 수치가 연구용역에 나왔다고 해서 OBS에 적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봤더니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제작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가정을 합니다. 만약 자체제작비율이 높는데 최대 인센티브를 2% 더 증액을 해 줄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130억원 가까이 더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라는 것은 연구용역하는 사람이 그냥 가정적으로 하나의 숫자를 써 놓은 것이고,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체제작을 많이 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일부 방송사들이 당연히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그것에 인센티브를 주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자체제작을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을 해야 하는 것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일부 방송사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연구용역 제시한 2%라는 비율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나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2%에서 약 130억원 가까운 것이 추가로 더 지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웬만한 지역 민방 60 몇 억, 60 몇 억 두 군데에 전액으로 지급되는 것의 합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OBS에게 증액해 주는 것이 두 지역의 민방 전액으로 지급되는 것과 같은 것을 인센티브로 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약간의 잘한 것에 대한 포상을 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두 지역 민방에 지급할 것을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에서 2%를 들고 있는 것은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가정을 한 것이지, 그것이 정책적으로 2%를 증액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모두 여러 가지 OBS의 상황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재 과징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 **나.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5-51-226)**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고, 제작비를 311억원 이상 투자하고, 현금보유액을 87억원 이상 유지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시정명령(안)입니다. '13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14년 상반기 증자계획 중 증자 미이행 금액 39.5억원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이행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증자이행 기한일 도래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14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금액 8억원을 '15년부터 '16년 제작투자비와 함께 '16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이행 금액을 '16년 집행할 경우에는 제작비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 1,200만원을 가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5년 말까지 적정 현금보유액은 '13년 재허가시 제출한 '14년 말 현금보유액 87억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15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재허가 조건 및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2013년 당시 재허가 조건은 재무건전성 확보,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및 유동성 확보 등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 증자 이행, '13년

수준의 제작비 투자, 적정 현금보유액 유지 등이었습니다. 한편, 위반내용 관련해서 OBS는 '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15년 9월 현재까지 재허가 조건 위반상태도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OBS는 재허가 조건에 따라 '14년 제작비를 311억원 이상 투자하고, 현금보유액은 '14년 말까지 8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심인 의견(요약)과 관련해서는 증자계획 관련 부분은 앞선 안전에 피심인 의견과 동일하며, 밑에 있는 제작투자비 관련해서 OBS는 '14년 매출 337억원 중 303억원을 제작비를 지출해, 지상파방송사 중 최고 수준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OBS는 광고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14년 303억원의 제작투자를 완료하여 사실상 관련 재허가 조건 이행을 완료하였고, 효과적인 편성 전략, 효율적인 제작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제작 투자비를 311억원 이상 유지하라는 것은 과도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금보유액 유지 관련해서는 현금보유액으로 87억원 이상을 항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방송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금보유액은 시장·경영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현금보유액을 87억원 이상 유지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심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BS는 증자 관련 재허가 조건에 대해 2015년 2월 6일 시정명령 이후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시정명령 및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자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재허가 조건을 준수할 이행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OBS의 제작비, 현금보유액 유지 관련 재허가 조건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OBS의 자체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과된 것이나, OBS는 '14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303억원을 투자했고, 현금보유액은 '14년 12월 말에는 49억원, '15년 6월 말에는 18억원을 유지하는데 그치는 등 그 이행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국 OBS가 '14년 상반기 증자계획, 제작비 투자, 현금보유액 유지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정명령은 재허가 조건부과 취지 및 '15년 2월 6일 부과한 시정명령 취지를 유지하되, 시정명령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작비 투자는 프로그램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 '15년부터 '16년 분할하여 이행토록 하되, 미이행 금액을 '16년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미이행 제작비에 추가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9월 중 OBS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내년 1월 중 시정명령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문제가 된 것이 재허가 조건 등의 증자를 못 했다, 제작투자비 이행 못 했다, 현금보유액 유지도 못 했다, 이렇게 3가지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앞에 안건에서 증자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서는 제작투자비 관련, 현금보유액 유지 관련 이 2가지 시정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3가지 건 다 합니다. 증자도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증자도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시정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재허가 조건을 이행 안 해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했고, 3개월 이내 불이행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또 시정명령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허가 조건 이행 안 하고 한 번만 과징금 받으면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재허가 조건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만약에 시정명령을 이번에 내려서 또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때는 다시 또 과징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가중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2분의 1 내에서 가능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이행을 못 하면 계속...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계속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재허가 때 감점요소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재허가 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이행을 못 했을 때 이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방송법에 매년 주기가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조건을 부과할 때 주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증자 같은 경우에는 '14년 상반기로 되어 있었고, 아까 같이 대부분 보통 결산이 끝나면 그 결산 1개월 이후에 저희에게 제작투자비 같은 경우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결산이 3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4월에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기간이 다 다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제작투자비 관련, 그리고 현금보유액 유지 못한 것, 이 부분도..., 특히 현금보유액 유지 못한 것이 다 채원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만약에 증자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건도 계속 이행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불이행된 것은 상반기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증자 관련해서 증자가 이행된다면 이 부분도 이행이 쉽기 때문에 안전 상정을 보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 안전 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단순한 제재의 의미가 아니고 상당한 수준으로 사전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경고의 의미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구두로 했다면 이제는 행정적인 조치로서 경고를 하는 것인데, 그래

서 OBS는 이 2건에 대해 처분통보를 받고, 스스로 특단의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릅니까요?

○ 최성준 위원장

-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보니까 OBS 직원까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직원이 직접 경영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니까 집행부, 경영진과 대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은 이번에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이 두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서는 당연히 잘 알 것이라고 했지만, 사무처에서 문서 통보할 때 그런 것들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면서 다시 또 그것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의 제재보다도 더 최소한 그 이상의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제재 때문에 억지로 시정명령을 이행한다기보다는 그 제재가 그런 영향을 미쳐서 저희로서는 이 시정명령이 이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안 중에 반드시 증거를 이행하라는 것보다 종전 시정명령과 같이 증거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방안을 마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으라는 것도 여전히 이번에 시정명령 안에 담아서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사실은 제작투자비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제작투자비에 합쳐서 함께 이행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2016년까지 2년에 걸쳐서 제작투자비를 다 이행하도록 그런 여유를 좀 더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재허가 조건에 '2013년 제작투자비 이상을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현금보유액은 2013년 재허가 시 얼마를 유지하겠다'라고 낸 것들은 아까 확인한 것처럼 모두 다 OBS가 재허가를 받을 때 자신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서에 그와 같이 하겠다는 것을 적어서 제출한 것을 받아서 재허가 조건에 집어넣었던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OBS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면 과연 미래에 우리가 어떤 상황까지를 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본이 계속 잠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본이 100% 다 잠식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차입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제작할 수 없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차입한 상태로 계속 적자 상태에서 그렇게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차입도 그렇게 자본잠식이 다 된 회사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보이면 차입도 사실은 쉽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동안 방송사업자가 자본잠식이 100%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OBS처럼 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자본이 잠식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광고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상태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자본잠식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그 상황까지 가정을 해 본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OBS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증자 부분에 대해서 또 현금보유액 문제, 특히 제작투자비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자상태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의 완화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제작을 100% 하면서 생기는 제작비에 대한 지나친 부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물론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제출할 때 그 사안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끔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 아마 그런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에게 재허가 조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은 현재 없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의견제출한 것을 보면 '제작에 관해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제작투자비를 311억원 이상 유지 하라는 것은 과도한 조치에 해당한다' 그런 방송사측의 의견이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본잠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방송사 측과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내용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서로 간에 협의를 앞으로 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방송사 측과 협의를 하는 부분도 필요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아직까지 그런 요청은 없고 들어오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제작비는 미이행금액이 8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이행하도록 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작비 투자 부분에는 그렇게 큰 우려는 없고 사실 증자 부분과 현금보유액 유지,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 (2015-51-22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5년 4월 29일 제18차 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 심의·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위원회 검토 결과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제18차 위원회 의결 당시에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하되,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

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 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하여 주신 내용은 '16년 이후 도래하는 재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시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부분은 전에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락됐던 부분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추가되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는 지난 8월 6일 위원회 보고드린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

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그중에서 해당 고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 이용자가 요금할인 내역을 정확히 알고 비교하여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여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결합상품에 대한 광고시 구성상품별 할인 내용 등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일부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시 일부 해지에 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약정기간과 관련해서는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와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 과도한 할인을 격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상품을 무료화 또는 저가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등결합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자가 그 인가서비스를 위탁판매 형식으로 결합판매 하는 경우에도 동등결합판매가 보장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제공을 거부 하는 행위 이외에 제공하다가 중단·제한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며, 제공대가 등을 차별하는 행위를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와 다른 사업자 간에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서 최대한 빨리 해당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 내용은 지난 8월에 보고된 내용의 후속조치로서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8월에 보고된 내용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있었을 수 있고, 시행령, 아니면 미래부가 해야 할 것, 아니면 시장조사, 교육, 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종합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때 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를 든다면 법 개정사항 중에 통합 방송법 개정안의 결합판매 시책에 관련된 조항은 지금 현재 법제처 심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제출하기 위한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 밖에 고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용약관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해당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지금 미래부와 같이 약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해지절차에 관련된 부분도 약간 전산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문자안내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이...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장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시장조사 중에서 지금 현재 허위·과장광고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그다음 경품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허위·과장광고는 종합 개선방안 마련하기 전에 이미 한 바도 있었고...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때 시장조사에서 중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사업자들 간의 불공정행위 이지 않습니까? 수익과 비용을 부당하게 산정한다든지, 회계분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때는 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이미 그것은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보고서 검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부와 KISDI, 그다음에 심지어는 방송정책국에 회계사도 있다고 해서 같이 조를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위원장님이나 이용자정책국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방통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도 마련했고, 여러 가지 시장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하게 천명한바 있어서 저는 후속조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도개선 방안 맨 마지막에 보면 추진일정이 있고 미래부와 방통위로 소관부처도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월별이라도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느낌으로는 8월에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에 실증적인 자료는 없지만 왠지 결합판매시장이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싶고, 그래서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조사, 허위·과장광고 말고 불공정 행위여부에 대한 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계획 중 일부는

법률개정이 필요해서 내년으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미룬 부분도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미룬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 가야 하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저희가 끈질기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진행상황을 그것을 '매달' 이렇게 정할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단위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결합상품 시장에서 규제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아주 단순하게 허위·과장광고 정도에 대한 규제를 했지, 이처럼 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만큼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도 더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 종합계획, 저희가 보고받을 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과도한 할인율 격차 방지, 제가 봤을 때는 결합상품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적인 장치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과도한 할인을 격차 방지,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을 적용하는 행위, 사실 '과도한' 그다음에 '현저한'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사업자들 간 이해가 갈렸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등할인율제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반면 차등할인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차등할인제도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구성 상품간 과도한 할인을 격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례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규제로서 이용약관 신고 또는 요금의 승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래부에서 사전적으로 미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용약관이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쉽게 말해서 무료,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실제 마케팅 영업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규제로 조사·제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부터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 첫째 줄에는 과도한 할인을, 그다음 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을, 그리고 또 그 밑에 참고 표시보면 '과도한 할인을 격차 방지' 그리고 개정안 본문 <나>에 보면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을 적용하는 행위', 이처럼 특별히 용어를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에 의해서 쓰신 것입니까?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통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고시 개정안에는 '현저히 차별적인' 이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본문이나 우리가 설명하는 자료에 용어가 가급적이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아닙니까? '현저한'은 뭐고 '과도한'은 뭐고, 이것을 받아보는 사업자나 또 언론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량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방통위가 통일이 되어 있다,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용어를 정리하시지요. 사실 의미는 같은 것으로 쓴 것 같은데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보시는 분이 또 오해를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할인을 격차 방지'라는 것 대신에 저희 고시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을 금지'라든지 그

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의미전달은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결합판매 할인을 문제, 시장 규모가 크고 외형, 매출이 큰 통신 쪽이 방송콘텐츠, 특히 유료 방송을 끼워팔기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동등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는 명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로서는 방송과 통신을 함께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방송콘텐츠를 보호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헐값으로 할인을 100% 무료로 끼워주기로 판매하는 것은 막아야겠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객관적이지 않은 현저한 차별 이런 것 말고 동등할인율을 우선 할 수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명료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구성상품 간에 동등할인율로 하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다양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요금 관련된 마케팅을 일률적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규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간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요금표 구성을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구성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방송과 통신 간의 균형발전이라고 할까, 방송콘텐츠의 보호와 발전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측면을 고려했고, 동등할인율을 비록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동등할인율 주장의 효과는 달성될 수 있도록 그때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양한 수단들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금 여기에 나온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 '부당한 할인율' 이것을 몇 퍼센트로 잡느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50%냐, 70%냐, 80%냐? 할인율 100%, 그러면 무료로 끼워주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어느 것을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법령에 계량화를 시켜서 명시적으로 하는 그런 입법례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사무국에서 몇 군데 방송통신사업자들을 확인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용약관을 놓고 볼 때 최대 60%까지는 격차가 난 상품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과연 현저히 차별적인 행위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후에 누가 신고가 들어오든 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원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률, 다양한 요인들도 사후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할인을 자체만을 놓고...

○ 김재홍 상임위원

- 현저한 차별이 아니냐 하는 것은 사안별로 우리가 심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 염매, 또는 약탈적인 가격설정이나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구체적인 케이스를 놓고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통사들이 IPTV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것을 이용해서 끼워팔기를 해서 결합판매라는 말이지만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통사를 경영하지 않는 다른 방송사들이 위기를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이 방송에서 뉴미디어, 이통, 모바일 이런 쪽으로 전부다 옮겨가고 있는 판인데 우리로서는 방송과 통신, 뉴미디어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그때마다 심결해서 정해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60% 안팎을 지켜야 한다, 60% 넘어서면 과도한 차별이다, 현저한 차별이다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말하자면 행정의 예측가능성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안 워딩 가지고 아까 ‘과도한이나’, ‘현저히 차별적이냐’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개정안의 문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용자정책국장이 타 입법례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현저성이 금지행위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금지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판단기준, 공정거래법뿐만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할인이다, 30%다, 60%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클리어 할 것 같지만 규제의 질, 규제 수준으로 봤을 때 아주 안 된 이야기지만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규제함에 있어서 그런 방식, 어프로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박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합상품시장에 대한 조사, 결국 조사를 하려면 경제분석도 해야 하고 시장분석도 해야 하고 회계분석도 해야 하는데 그런 통계학적인 자료는 축적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결합판매와 관련한 시장조사가 축적이 되다 보면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자료를 축적하고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다 보면 대략적인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마다 수익과 비용이 다 다른 상황에서 저희가 ‘몇 퍼센트가 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것은 지극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업자나 시장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측가능성, ‘어떻게 이것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느냐?’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시장조사를 통해서, 심결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정안 중에서 저는 가장 큰 핵심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 세 번째 사업자 간의 동등결합판매도 중요하지만 우선 오랫동안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이슈가 되어 왔던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브로드해서 애매모호하고,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우리 방통위가 실제 시장조사, 심결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과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예측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다른 고시에도 이와 같이 ‘현저히 차별적인’이라는 표현이 다 사용이 되고 있고, 결국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시장상황과 거기에 대한 저희 기초조사,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한 저희 심결에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이용자정책국에서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개정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상향되도록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행령에 반영하고, 아울러서 과징금과 관련된 용어를 타 법령과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시행령에 해당 근거 법조문을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2’로 하고, 그다음에 ‘1회 위반시 1,000만원’, ‘2회 위반시 2,000만원’, 그다음에 ‘3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산정단계상의 용어가 타 법령, 즉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또는 단말기유통법령과 동일하게 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관련된 용어도 다음 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금액, 필수적인 가중·감경, 그다음에 추가적인 가중·감경, 중대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보통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최대한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EU에 비해서 수집·관리·이용, 제3자 제공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엄격합니까, 느슨합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사전 동의를 받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왜냐하면 얼마 전에 EU의 개인정보보호,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자료를 상호 주고 받으려면 EU의 제도에 뭔가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EU에 소위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적합성 평가가 있고….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는 아직….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우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은 EU의 기준에 저희들은 신청을 하고 EU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적합한지 심사에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EU 국가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EU에 진출한 기업들이 수 많은 혜택을 얻게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럴 것이고, 우리도 개인정보보호가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U에 비해서 무엇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EU가 있는 브뤼셀에 출장을 한 번 가야했는데 예산이 바닥났다고 해서 못 간다는데….

○ 최성준 위원장

- 적합성 심사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와 같이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시작을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신청 준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또 EU에서 심사를 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가 정책기구로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EU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할까,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리고 언제쯤 이것이 추진되어 갈 것인지...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정부 내에서 민간 합동 TF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지금 정부의 목표는 한 2년 이내에 가입하도록...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부 내에서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것은 행자부,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EU와 관련된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KISA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EU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법·제도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됐지만, 또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EU의 적합성 평가에 부응해서 거기의 일원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을 정부 부처 내에서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누가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은 안보특보께서 주관을 해서 그동안 민간업계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EU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강화, 엄격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코스트가...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얼핏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 EU 국가나 EU 역내에 있는 IT 기업이 됐든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를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전을 원활하게 받아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런 니즈 같은데...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현지 국가에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제 이야기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화두를 던지셨는데, 어제 세미나에 제가 가서 오후 내내 들어보니까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국제 규범 형성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EU와 미국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나 관할기관 등등에 있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물론 지금 EU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좀 더 전략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인터넷 거버넌스 아래서 국제적으로 논의는 많이 되지만 역내 간, 국가간의 이해관계나 전략의 차이로 쉽게 어떤 단일화된 어프로치를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김재홍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이용자정책국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는 것도 정리해 주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EU와 한국의 개인정보 법제가 어디가 더 강하나, 덜하나도 학자, 전문가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한번 전문가를 초청해서 발표도 듣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도 하고 자료도 받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 발언 중에 전문성이 높은 이기주 위원께서 끼어들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저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해서 거시적인 어프로치가 있고 미시적인 어프로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미시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는 우리가 앞서 있고 더 엄격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EU보다 훨씬 느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시적으로 보기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에 비해 잘 되어 있느냐, 엄정하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말해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너무 많았고, 또 통신 쪽 다른 업체에서도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 개인정보는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다' 하는 이미지가 있던 말씀이지요. 그래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상당한 노력을 해야 법·제도도 강화하고 제재라고 할까, 행정지도도 더 강화해서 인식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굉장히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잘 되어 있다, 한때 실수로 유출사고, 재작년, 작년 제일 많았지요. 디지털 문화, 디지털 산업이 성장 위주로만, 편의주의 위주로만 달려오다가 성찰적인 정책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되돌아본다고 할까, 중간결산을 해 보고 성찰적인 정책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부가적으로 물어보면 유럽의 개인정보 적합성, 적절성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단위가 미국, 일본, EU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산업을 해야 한

다고, 앞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럽과 개인정보보호 이것을 제대로 적절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무슨 산업진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세계화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되어 있습니까?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적절성 평가제도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적합성 평가 받은 나라가 11개국인데 일본은 아직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본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 **이기주 상임위원**

- 11개국이라는 것이 EU 국가 중에만 11개 국이라는 것입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EU 말고겠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EU 외에서...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비EU 국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비EU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EU는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 **이기주 상임위원**

- 한 번 11개국 예를 들어보십시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최근에 뉴질랜드가 한 2년에 걸쳐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본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미국은...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미국은 세이프하버(Safe harbor)라고 별도로 양국, EU와 미국 간에 그런 적절성 관련 부분

이 조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공부를 위해서도 브뤼셀에 한 번 가 봐야겠는데 우리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긍정적으로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에 필요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상임위원들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유난히 많은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느슨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정보보호, 시큐리티 정보보안, 해킹의 취약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 과거에 사건 난 것을 보면 90%가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용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만을 위한 법·제도 강화는 곤란하다는 측면 하나와 두 번째는 법·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의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제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라는 이런 개인적인 인식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계기로 위원님들 간에 한 번 스티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관리소홀, 의식, 그다음에 해킹에 대한 방비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합성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5분 폐회 】